

2. 건설기계 등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각종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 방법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등의 일반기준

- 1)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 및 제한속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 4)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및 버켓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시동열쇠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5)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및 주용도 외 사용금지 하여야 한다.
- 6) 전조등 및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운전자는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장비 및 운반하역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사용시 전도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1) 공통사항

- 1) 건설현장에 투입·사용되는 모든 건설기계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건설기계는 유자격 운전자(해당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4)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으로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 5) 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등 출입인원을 통제하여야 한다.
- 6) 건설기계는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 기록하여야 한다.
-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건설기계는 최대 20km/h 이하로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 9) 모든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안전장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크레인 등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1) 아웃트리거는 편평하고 견고한 지면에 설치하고 가능한 최대로 인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연약지반에 설치시 아웃트리거 하부에 견고한 받침목 설치하여야 한다.
- 3) 아웃트리거 받침목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정격하중을 표시하고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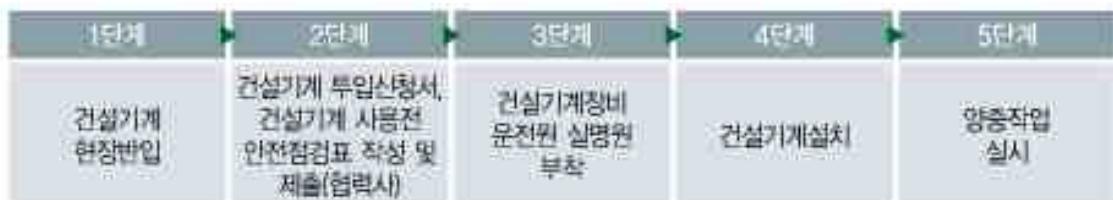
(3) 기타 건설기계

- 1) 이동로 또는 작업장소상에 요철 또는 장애물 발생시 요철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수평상태 확보 후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 2) 연약지반에서 이동 또는 작업시 지압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천도위험구간에서의 작업 및 이동시 유도/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4) 굴착 또는 성토구간의 단부에 균접하여 운행시 천도/천락을 방지하기 위해 토사 다이크 및 라바콘 등 장비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요

- 양중기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화물 등을 수직, 수평으로 인양하는 기계기구로서 이동식크레인 등을 말한다.
- 양중기는 설치, 해체시 재해가 발생되거나 사용 중에 자재가 낙하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되므로 설치, 해체 작업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공정흐름



3. 주요 위험작업



건설기계 현장반입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



건설기계 설치 작업 + 마우트리거 버팀목 등



양중작업(H-Pile) 실시

4.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1) 건설기계 현장 반입 및 사용전 점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주변 근로자와 인양자재 충돌 •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 요동에 의한 근로자 충돌 • 이동식크레인 혹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 낙하 • 와이어로프 철단에 의한 H-Beam 인양 중 낙하 • 인양 중 이동식크레인 끌이 부러지면서 자재 낙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작업의 적정성 사전 점검 •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품 사용 • 이동식크레인 혹에는 와이어로프 탈락방지용 혹 해지장치 설치 • 와이어로프는 작업전 손상, 변형 등이 없는지 점검 후 사용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분체, 봉대, 기체장치 등의 안전성을 점검 후 사용

2) 건설기계 설치 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요동에 의한 근로자 충돌 • 이동식크레인 혹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 낙하 • 인양 중 이동식크레인 끌이 부러지면서 자재 낙하 • 자재 인양 중 아웃트리거가 침하되면서 전도 • 이동식크레인을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 중 전도 •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봉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품 사용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와이어로프 탈락방지용 혹 해지장치 설치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분체, 봉대, 기체장치 등의 안전성을 점검 후 사용 • 아웃트리거는 천고하고 평탄한 지반 위에 거치 •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의 작업은 자양하고 부득이한 작업시 유도차 배치하여 접근한계 거리 유지

3) 양중작업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자 미배치로 작업 중 자재에 충돌 •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면서 낙하 • 자재 인양 중 아웃트리거가 침하되면서 전도 •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불대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감전 • 봄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던 중 전도 • 자재 인양 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 불대를 세운 채로 운행 중 크레인 전도 • 이동식크레인을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 중 전도 • 혹 해지장치가 미설치되어 자재 인양 중 자재 낙하 • 과부하 방지장치 고장으로 중량물 인양 중 불대 꺽임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미숙에 의한 자재의 불시 낙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해 부딪히거나 추락 • 이동식크레인 회전 중 크레인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 해체된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불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자 배치하여 자재 인양 안전하게 유도 • 와이어로프 등 인양로프는 손상이 없고 전고한 것을 사용 • 아웃트리거는 전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 작업시 유도차배치하여 접근 한계 거리 유지 • 봄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건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자재 인양시에는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자재가 인근 구조물에 걸려 요동치는 것 금지 • 불대를 세운 채로 운행 금지 • 이동식크레인은 평탄하고 전고한 지반에 거치 • 인양 혹에는 혹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수시 점검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경험유무 확인, 작업의 적정성 사전 점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이동식크레인 회전 반경 충돌위험 부위에 접근 위험 표지 설치, 유도자에 의해 주변 근로자 통제 • 해체된 자재 적재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